의 안 번 호 603 【울산광역시중구 정책자문단 설치·운영 조례안】

검 토 보 고

### 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·제출자 : 2008. 1. 10(목) · 중 구 청 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08. 1. 11(금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08. 1. 28(월)

#### 2. 제안이유

구정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로 중구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.

# 3. 주요골자

- 가. 구정의 주요정책의 입안·집행·평가 및 각종 사업의 설계용역,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자문 기능 (안 제2조)
- 나. 정책자문위원은 교수, 연구원, 건축사, 토목기술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함(안 제3·4조)다. 자문단은 분야별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일반행정, 주민생활지원, 건설도시 등 3개 분과위원회로 운영함(안 제6조)
- 라. 자문단이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자료제출, 의견진술, 기타 협조요구를 함(안 제8조)

#### 4. 관련법규

가.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(자문기관의 설치)

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·권고·건의·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

# 5. 검토사항

- 가. 조례제정에 따른 상위법 및 타법과의 배치여부
- 나. 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문단 설치·운영현황(별첨) 및 위원수의 적정 여부 등

# 6. 검토의견

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학계와 전문가의 자문등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이 해당 전문 분야의 학문과 기술을 접목하여 보다 수준 높은 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(별첨)

# 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문단 설치·운영현황

시・군별	구성 인원	분과위원회	구성요건	임기
서울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	20인	_	○대학교수 ○전문가 등	2년 (연임가능)
서울 양천구 정책자문단	30인	행정, 재정, 복지환경, 도시건설	○ 대학교수 ○ 전문가 ○ 법조계 등	2년 (연임가능)
서울 은평구 정책자문협의회	50인	행정재무, 생활복지, 도시관리, 건설교통, 보건행정	○ 대표성 ○ 전문가 ○ 법조계	구청장 임기 만료일까지
인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	20인	기획행정, 문화복지, 산업경제, 환경위생, 도시개발	○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인사	2년 (연임가능)
대구 동구 정책자문단	30인	필요시 소그룹	○전문가 ○학식 덕망	2년 (연임가능)
대구 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	30인	필요시 소위원회	○ 대학교수 ○ CEO ○ 시민단체 등	2년 (연임가능)
대전 동구 정책자문단	25인	실국별(3개)	○조교수이상 ○동자격자 등	2년 (연임가능)
울산 남구 정책자문단	30인	분야별 분과위	○ 전문가	2년 (연임가능)